



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-0 인천부평경찰서

인천부평경찰서장 (문의 김현
21334

008 2025년04월23일 제작 [접수국 : 광화문]



보통등기 반송불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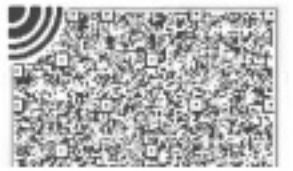
130 62 78

서울 동대문

서울 동대문구 :

이 : 귀하
02480

2504220006540001004



인천부평경찰서

제 2025- 0 호

2025. 4. 22.

수 신 : 이 귀하

제 목 : 수사결과 통지서(고소인등·불송치)

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접수일시	2025. 3. 11.	사건번호	2025-(
죄명	사기		
결정일	2025. 4. 22.		
결정종류	불송치 (혐의없음)		
이유	별지와 같음		
담당팀장	통합수사5팀 경위		☎ 032-363-_____

※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

-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(범죄피해자보호법)
 -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
-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(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)
 -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
-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(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)
 - 각급법원에 신청,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
- 가정폭력·성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
 - 여성 긴급전화(국번없이 1366),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등
- 뺑소니·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)
 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1544-0049)에 청구 가능
-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
 -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,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
-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(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·출장소)
 -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(손해배상청구,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)
-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
 - 국민신문고 www.epeople.go.kr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
-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
 - www.humanrights.go.kr, 국번없이 1331
-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국번없이 1577-1295)
 - 피해자나 가족,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

인천부평경찰서장





【 별지 】

【 결정 종류 】

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.

【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】

2024. 7. 피의자는 외국인전용클럽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도하게 하여 사기

-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.
- 그러나, 피해자 주장과 달리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상당하며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
-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.

※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·심의신청 방법

<결정 종류 안내>

-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.
-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,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·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.

<이의·심의신청 방법>

-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(고발인은 제외)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.
- 수사 심의신청 제도(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)
 -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관할 시·도 경찰청 「수사심의제」에 심의신청

